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서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차례

차례	2
요약	3
총론	4
현행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	8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13
첨부1.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	16
첨부2. 신·구조문대비표	20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이해충돌 근절 위해 현행 공직자윤리법 당장 개정해야

- 본 보고서는 2011년 5월 26일 청와대에 전달될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서임
 -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법’이 통과된 후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음. 고위공직자들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과 로펌, 군수업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전관예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됨. 저축은행 사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6월 초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공정사회 구현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고 했음.
 - 한국사회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온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나 이해충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 참여연대는 이미 5년 전부터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해왔으며, 제도의 보완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음.
 - 최근 진행된 한국행정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일반국민들은 전관예우 관행이 전 부처에 걸쳐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퇴직한 상급자를 의식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음. 이와 함께 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제도의 취업대상 기업 및 기간 확대·강화와 행위제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
 - 참여연대는 이번 기회가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전관예우 대책 마련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 모두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임.
 - ▲부정한 청탁행위와 현직 공직자에 대한 사적만남을 제외한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여부를 보고하는 등 행위 제한제도 도입 ▲취업개념의 명확한 규정 ▲시행령에 규정된 취업제한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기간확대 및 법률로 규정 ▲시행령에 규정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와 규모 확대 및 법률로 규정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시 처벌조항 규정 ▲공직자의 청렴의무 구체화 ▲취업승인의 예외적 허용

유명무실한 퇴직후취업제한제도와 공직자윤리법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법'이 통과된 후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음.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과 로펌, 군수업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고위공직자들이 전관예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됨. 전관예우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로 퇴직후취업제한제도가 존재하지만,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도 그 관행의 뿌리가 깊고 실제 사례도 상당하다는 것이 최근 행정연구원 조사에서 확인되었음. 행정연구원이 지난 5월 17일 발표한 '전관예우 관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국민·공무원 인식 조사'¹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 중 고위공무원단의 15.7%가 퇴직한 전직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고, 이를 들은 경험은 45%에 달함.

저축은행 사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6월 초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공정사회 구현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고 했음. 그러나 청와대는 전관예우 근절을 외치며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차관을 지냈고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매월 2,500만원씩 총 1억 2,500만원을 받아 전관예우 혜택을 누린 권도엽씨를 지난 5월 7일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상황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전관예우 대책 마련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회전문 인사를 지양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임.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 확립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 형성 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고지거부를 통해 직계존비속의 재산 등록을 거부하여 손쉽게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거나,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와 기간의 협소, 이해충돌행위 제한 규정 미흡 등으로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나 이해충돌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음. 더불어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연관성이 크고 영향력이 막대하며 종신연금과 의전 등의 혜택을

1 한국행정연구원 '전관예우 관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국민·공무원 인식 조사' 2011년 5월 11일~16일, 일반국민 3413명, 공무원 1676명 응답

받는 전직대통령의 재산공개 규정 미비 등으로 허점이 많아 전면개정이 필요하나, 본 의견서는 우선 해결되어야 할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 작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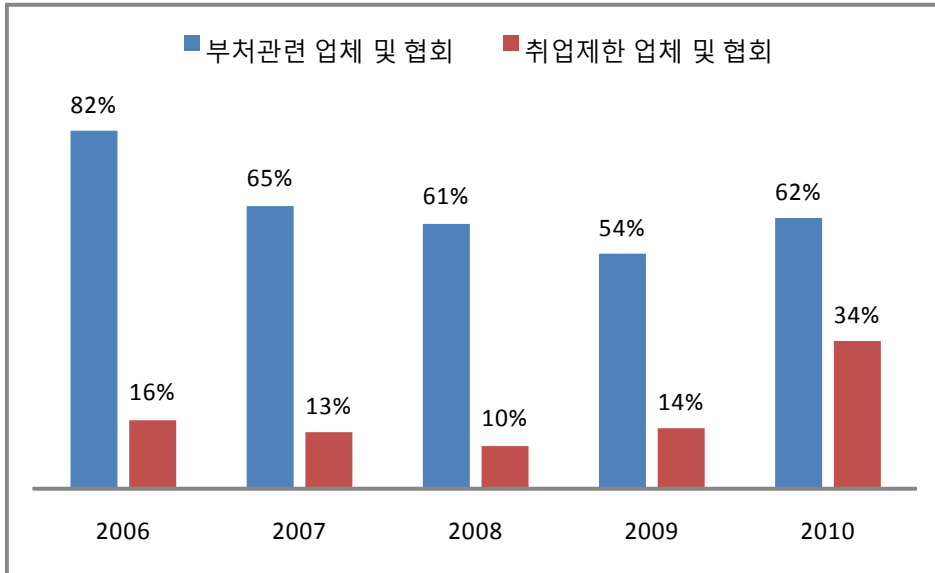
현행 퇴직후취업제한제도는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해충돌을 발생시켜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퇴직자공직자들의 업무연관성 있는 영리업체로의 취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일례로 참여연대는 2007년 발행한 '경제관료퇴직후취업제한 보고서'에서 금융회사의 감독 및 관련 정책의 결정을 담당하는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융회사로 가거나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관료들이 기업과 법무법인 등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이를 강하게 비판한바 있음. 그러나 최근 보도된 언론 기사 등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금융감독원 출신 78명이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했고, 11개 대형 법률회사(로펌)에는 총리·장·차관 등을 지낸 고위공무원 출신 120명이 고문이나 전문위원 직함으로 재직 중이며, 10개 대형 회계법인에도 고위공무원 출신 50여명이 활약 중임.² 특히 로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퇴직자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문제를 2000년 초부터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2006년부터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를 모니터하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주장해왔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23건이나 되며 그 중 13건이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또한 참여연대가 2006년부터 매년 발행해온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직자들의 부서관련 업체 및 협회로의 취업(82%→65%→61%→54%→62%) 및 취업제한 업체로의 취업(16%→13%→10%→14%→34%) 비율이 모두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이후 다시 급증했음.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의 윤리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임.

2 조선일보, 2011.05.16 대형로펌은 '작은 국가'....사법·행정·입법부에 군 출신 까지 대거 영입

<그림 1> 2006년~2010년 부처관련 및 취업제한 업체 취업자 현황* 비교표



출처 : 참여연대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0'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퇴직자 중 참여연대가 분석한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와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자의 비율

※ 2006년 조사대상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5개월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59명

※ 2007년 조사대상 2006년 6월 1일 부터 2007년 5월 31일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132명

※ 2008년 조사대상 2007년 6월 1일 부터 2008년 5월 31일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140명

※ 2009년 조사대상 2008년 6월 1일 부터 2009년 5월 31일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190명

※ 2010년 조사대상 2009년 6월 1일 부터 2010년 5월 31일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169명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이해충돌 강력히 규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나듯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문제는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정부 각 부처의 퇴직자들이 퇴직 전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사실상의 로비스트로 취업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됨³. 2010년 9월 발간한 참여연대의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0'에 따르면 국방부 출신자들이 방위산업체 또는 군 관련 건설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찰청 퇴직자가 경비·보안용역 전무업체 취업하고, 기업의 독점·불공정거래·담합 등을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자가 담합 등의 의혹으로 조사 대상이었던 업체로 취업하기도 했음. 이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검사·감독을 막아 버리나 부패를 은폐하거나, 대규모 국가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의 경쟁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큼.

3 한국행정연구원 앞의 설문조사,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70명중 24.3%가 퇴직한 전직 상관을 의식한 의사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음.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다년간의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 2003년과 2004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으며, 2005년에는 참여연대의 청원안이 일부 반영되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음. 그 후에도 참여연대는 17대 국회에 수차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고 행정안전부는 2008년 그 내용을 상당수 반영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당시 개정안에 담겼던 주요 내용은 ▲ ‘취업’에 대한 정의 법률 규정 ▲ 퇴직 전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상임위원에 대한 재산등록·공개의무 부과,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 마련 ▲ 해임요구절차 간소화 ▲ 취업제한여부를 확인 받지 않은 임의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었음. 그러나 정부는 같은 해 11월 9일 재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백지화시켰고, 같은 달 28일, 앞서 입법예고 되었던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음. 당시 행정안전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적극 개정했다면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대규모 비리사건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공직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이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그러나 퇴직공직자가 재직 시 직무상 취득한 정보, 대인관계 등을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할 경우 불법로비를 통한 정책결정·불법계약, 관리·감독의 회피와 이를 이용한 대규모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퇴직공직자의 업무연관 업체 및 기관으로의 취업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

현행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

1. 이해충돌 행위 방지 및 처벌조항 규정의 미흡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취업'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만 제한하고 있을 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들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미흡하고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음. 때문에 비록 취업이 아니더라도 인적관계를 이용해 중요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청탁행위 등의 로비 활동이나 퇴직 전 소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의 대리 등을 막을 수 없음. 예를 들어 기업체의 자문이나 고문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자문료를 받으며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경우 취업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제한제도로 규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2. '취업' 개념 및 업무연관성 판단기준과 범위 모호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의 개념과 활동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문·고문 등의 기업 관련 활동에 대해서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업무범위도 소속했던 기관이 아닌 소속했던 부서 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퇴직공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동료, 선후배를 이용해 부서를 넘나드는 포괄적인 청탁행위나 로비활동을 할 경우 규제할 수 없음.

2004년 당시 '이현재 재경경제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등 전·현직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국민은행으로 자문료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수 천 만원을 받은⁴' 것이 드러났지만 이들은 취업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었음. 현행 취업제한제도로는 고문 명목의 자문료 수수를 막을 수 없음.

참여연대가 2010년 9월에 발행한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0'에 따르면 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퇴직자의 74%가 경비업체나 군납업·방위산업체 등 해당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업체로 취업했음.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경우 은행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가 상호저축은행이나 증권·보험회사로 취업하거나 그 반대로 비은행 관련 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은행으로 취업 하는 등으로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4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4.7.19. 논평 '국민은행 자문료 수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여부 조사해야'

<표 1> 참여연대가 분석한 경제관련 부처 퇴직자 중 관련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사례

유형	소속 및 직위	취업업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2명)	소비자정책기획팀장/공정거래제도발전센터/ OECD서울센터 경쟁제한규제 개혁작업단장	기아자동차(주)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KCC 사외이사
국세청 퇴직자(4명)	소득세과 과장/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삼화왕관(주) 부회장 [납세병마개제조]
	부산지방국세청	(주)경남은행 세무팀장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동대구세무서	(주)제다 사외이사
	충북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장/ 대전지방국세청 영동세무서장	삼화왕관(주)부사장 [납세병마개 제조]
금융위원회 퇴직자(28명)	재정경제부 서비스정책과/ 민간휴직근무(신영증권)	(주)신영증권 상무이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은행3팀/ 비은행검사2국 서민금융팀/ 총무국 리스크검사 지원국 신용리스크팀	푸른상호저축은행(주) 상근이사 감사위원
	금융정보분석원/구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한국증권금융(주) 사장
	금융감독원 공보실장/국제협력국 연구위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 신탁2팀장/상호금융3팀장/총무국	외환선물(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 자본시장 조사1국장/ 변화혁신기획단장	LIG손해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춘천출장소장/ 총무국 소속 리스크검사지원국	솔로몬상호저축은행(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 신탁2팀장/ 상호금융 3팀장/대부업 2팀장	HK상호저축은행(주) 감사부장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보험조사실장/ 검사지원국장/일반서비스국장/인력개발실/ 거시분석국 조사연구실	두산캐피탈(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검사지원국 운영리스크팀/ 거시분석국 조사연구실/총무국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감사
	금융감독원 증권검사2국장/거시감독국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인력개발실 전문화연수팀/ 신용회복위원회 네트워크추진단장	(주)하나은행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뉴욕사무소/ 기획조정국/인력개발실 전문화연구팀/ 거시감독국 조사연구실	(주)부산은행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인력개발실 전문화연수팀/기획조정국	현대캐피탈(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총무국 인력개발실/ 자본시장조사2국장	롯데카드(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총무국 전문화연수팀/ 기획조정국 대전지원장	(주)하나다울신탁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생명보험4팀/ 보험검사1국 보험2팀/보험검사2국 보험3팀	KB신용정보(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리스크검사지원국 시장리스크팀/ 총무국 소속기업금융개선팀장/ 기획조정국 대전지원민원팀장/ 소비자보호센터분쟁조정실 증권분쟁조정팀장	동양종합금융증권(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총무국연구위원/보험개발원파견/ 손해보험서비스국 손해보험1팀장/ 보험검사2국 보험1팀	동양생명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보험개발원파견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 연구위원/ 총무국 회계감독1국장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총무국 연구위원/ 예금보험공사파견/ 저축은행서비스국 저축은행 6팀장/ 비은행검사1국 상호저축은행 6팀장	KB자산운용(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전략기획본부장	신한생명보험(주) 사외이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사업/ 경영지원본부 이사수탁사업	에이엠디신용정보(주) 비상근 경영고문
	신용보증기금 경영지원/보증사업부문 이사 /경영지원부문 이사	현대증권(주) 비상근자산관리 상담역
	신용보증기금 채권관리사업본부 이사/ 보증사업부문 이사/전략사업부문 이사	현대증권(주) 자산관리 상담역
	자산관리공사 기업개선부, 특별채권부, 해외채권관리부, 일반채권부 이사/ 투자사업본부 이사/전략사업본부 이사	솔로몬신용정보(주) 비상임고문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외사업부 이사/ 조세정리, 국유재산관리부 이사	(주)생보부동산신탁 사외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감사원 감사교육원 연구위원	(주)삼성증권 상임고문
기획재정부 퇴직자(1명)	한국투자공사 사장	KTB자산운용(주) 사외이사 감사위원
한국은행 퇴직자(1명)	부총재보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사외이사

1) 조사기간 및 대상 : 2009년 6월 1일-2010년 5월 31일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2) 출처 : 참여연대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0'

고위직일수록 소속 부서를 넘어서는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고,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 분류 자체가 불분명해 소속부서(과)의 업무연관성만을 근거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금융감독원의 경우 감독 업무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 퇴직관료의 금융관련업체의 취업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그와 더불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던 퇴직공직자는 회사 등과 보수의 규모에 관계없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회사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함.

3.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범위 및 기간 협소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퇴직공직자가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의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로 하고 있음. 그러나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됨. 특히 이 규정 밖의 기관으로의 취업이나 활동은 막을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등으로의 취업을 막을 수 없음. 또한 관보에 해당기업의 고시기간이 1년 단위로 이루어져 신설법인의 경우 누락될 수 있음.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다수를 영입하여 고문 등으로 고용하고 있는 '김앤장'이나 법무법인 '태평양' 등 대형로펌의 경우 자본금이 작기 때문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지 않음.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임.

취업제한 기간도 현행법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제한기간이 분야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고 상대적으로 짧아,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퇴직자의 취업을 분리해서 규제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로 취업하기 위해 퇴직 전 일정기간을 다른 부서로 옮겨 일하는 등의 경력세탁을 막을 수 없음.

4.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형식적 심사와 소송을 통한 취업유지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취업을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형식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업무연관성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취업확인을 남발하고 있음.

참여연대의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0'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취업제한을 한 사례들 외에도 업무연관성이 밀접하지 않다고 판단해 취업을 허용해준 퇴직자 130명 중 34%인 44명이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음(이는 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퇴직자 26명을 제외한 것으로 이들을 포함할 경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대표적인 사례로 ▲경찰청 경비국장·경찰공제회 이사장의 인터넷 보안 전문 업체 (주)씨큐어넷 사장 취업 ▲독점, 불공정거래, 담합 등을 규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장 담합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주)KCC 취업 ▲정보통신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 및 예산 편성 및 조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산하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의 (주)KT 대외협력부문 부회장 취업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의 2010년 말 발주되는 총 4~5조원 예산의 대규모 평택 미군기지 시설사업에 뛰어들 전망인 대림산업(주) 상무 취업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와 관련해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의 한국증권금융(주) 사장 취업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에 예치 및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 업자에 재위탁 업무를 하는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KTB자산운용(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취업 ▲농어촌지역개발에 관한 업무와 대단위개발 간척사업 종합관리 및 민자사업의 시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겸 지역계획 이사의 최근 새만금방조제 메가리조트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한국농어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주)한화건설

상임고문 취업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자원관리본부전력정책팀장의 유도무기 등 종합군수지원 업체인 LIG넥스원(주) 상근고문 취업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의 에너지 기반의 제조업체인 (주)STX 사장, 한국가스공사와 우즈베키스탄 가스화학 공사 건설 및 유전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STX에너지 대표이사 취업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해외건설협회 부사장의 토목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해외건설사업 등을 사업으로 하는 (주)부영 취업 등을 들 수 있음.

또한 퇴직공직자가 업무연관성이 큰 업체로 취업했을 경우, 취업업체에 대한 해임요구권자가 소속행정기관의장으로 되어있어 재취업제한 대상자가 공직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취업을 유지하고, 비록 각하되더라도 이후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취업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해임요구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5. 업무연관성 있어도 요청만 하면 승인되는 취업승인 제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이용해 취업승인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대부분 취업승인을 하고 있음. 취업승인은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도 예외조항을 들어 취업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취업확인제도보다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음. 매우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할 취업승인 제도가 업무연관성이 명백한 공직자의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표 2>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사례

소속	직무	취업 업체 및 직위	승인여부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사외이사	승인 (1호)
국토해양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상임이사)	인천공항에너지(주) 대표이사	승인 (1,3호)

1) 출처 : 참여연대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0’

2) 조사기간 및 대상 : 2009년 6월 1일-2010년 5월 31일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1. 이해충돌 행위 제한 및 처벌조항 도입

현재의 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자체를 막는 규정을 공직자윤리법에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됨.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소속기관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함.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퇴직공직자의 청탁 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 행위의 대리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공직자윤리법에 신설해야함.

이 경우 현직공직자는 퇴직공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청탁의 경우는 즉시 보고하도록 해 퇴직공직자의 로비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현직공직자는 징계하도록 해야 함. 덧붙여 퇴직공직자가 이해충돌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해야 함

2. 취업개념의 명확한 규정 및 업무관련성 범위와 기간 확대

퇴직공직자의 '취업'의 개념을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해야함.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업무연관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와 법령 제·개정에 관여하는 업무 등 추가하여 강화해야함.

또한 퇴직 후 취업제한 기관과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기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을 경우로 제한하던 것을 퇴직 후 2년간은 동일하게 하되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 하고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는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밀접한 업무 연관성의 범위를 확대해 취업을 제한하도록 강화해야만 '신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음.

3.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와 규모 확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규정이 너무 협소하여 업무연관성이 명백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의 취업을 막지 못하고 있음.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

체 등으로 법률로 규정해야함.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협회(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변호사 등(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 취업을 원할 경우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요건을 강화해야함.

<표 3>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참여연대 개정방향 비교표

내용	현행 공직자윤리법	참여연대 개정안
퇴직공직자 이해충돌 행위제한	없음	·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이해충돌 행위 규제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 제한 · 퇴직전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제한 · 퇴직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금지 · 현직공직자에게 사적인 만남 외에 청탁 및 업무와 관련한 접촉 금지 및 관련 행위 보고의무 신설 · 이해충돌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설
‘취업’에 대한 규정	없음	·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
업무연관성 범위 및 기간	·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 · 업무연관성의 범위 대해서는 시행령에만 규정	·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 기간 확대 및 업무연관성의 범위 법률로 규정 · 기업체가 이해당사자 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와 법령 제·개정에 관여하는 업무 등 추가 ·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연관성의 범위 확장
취업제한 대상업체의 종류와 규모	·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규모에 대해서는 ‘자본금 50억 매출액 150억 이상’으로 시행령에만 규정	· 자본금 10억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된 기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 등으로 법률로 규정 ·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영리사기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조합 포함
공직자의 청렴의무	없음	·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음(신설)
취업승인	· 예외조항 시행령에 규정	·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법령에 규정

4. 불법취업자 해임요구 절차 간소화

현행법은 규정위반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임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간소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불법 취업자에 대한 해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임요구에 불복하고 소송을 통해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 소송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승소한 경우 판결시점부터 퇴직 제한 기간을 새로 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임.

5.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 심사 강화 및 청렴의무 강화

대다수 공직자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온정적·형식적으로 업무연관성에 대한 심사를 하고 취업확인을 남발하였기 때문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본분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고 자체 사무국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방지를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을 규정한 1조에 규정하고 공직자의 구체적인 청렴의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청렴의무 규정에는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의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6. 취업승인의 예외적 허용

취업승인 제도는 취업제한제도의 예외로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임. 그러나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조차 취업승인 조치가 남발되고 있음.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더 강화해서 규정해야 함. ¹⁾

첨부1.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전관예우 근절과 퇴직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법률 제 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공개 및 재산형성 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주식 등의 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과 청렴성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청렴의무를 가진다.

1. 공직자는 정부 또는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임의로 정부 또는 그 기관을 구속하는 약속을 할 수 없다.
2.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4. 공직자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도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공직자는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잘 보호,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또는 기타 사례 명목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법에 위반하여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할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 (퇴직자의 이해충돌 활동 제한) ①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각호의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서는 아니 된다.

1.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
2. 퇴직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3.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4.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는 퇴직공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 방식이나 방법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영리사기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취업(이하 취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변호사 등 및 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 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변호사 등에 취업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며, 아래 6호의 경우에는 회사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없다.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
8. 기업체에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과 직접 관계되는 업무
9.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 이거나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체. 다만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오지 않은 경우 전년도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
 3.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인수합병이나 명의변경, 신규사업자 등록 등으로 이름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해오던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체
-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2월 중에 제 2항의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리사기업체, 변호사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 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취업승인) ①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다.

②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거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제16조의4에 의한 이해충돌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나 협회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 (이해충돌행위금지 위반의 죄) 제16조의6을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이해충돌행위를 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제2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 형성 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1조 (목적) ----- -----, 주식 등의 백지신탁, -----증식과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과 청렴성의 기준 구체화를 통해 업무의-----봉사자로서의-----.
<신설>	제1조의2.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청렴의무를 가진다. 1. 공직자는 정부 또는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임의로 정부 또는 그 기관을 구속하는 약속을 할 수 없다. 2.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4. 공직자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도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5. 공직자는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잘 보호,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또는 기타 사례 명목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 법에 위반하여 취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 ----- ----- -----

<신설>

제16조의4 (업무 외 소득제한) ① 전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외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그 업무 외 연소득은 연 급여총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②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하여 얻는 개인소득은 위 소득제한금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③ 전1항의 소득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 본다.
<신설>	제16조의5 (대부등의 제한) 공직자는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의6 (퇴직자의 이해충돌 활동 제한) ①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각 호의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된다. 1.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 2. 퇴직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3.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행위의 대리 4.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퇴직공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 형식이나 방법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영리사기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또는-----

-----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취업(이하 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변호사 등 및 협회에 취업 할 수 없다. 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변호사 등에 취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아래 6호의 경우에는 회사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없다.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 사건과 관계되는 업무
8. 기업체에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9.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

<신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간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소속 부서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항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이거나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체. 다만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 오지 않은 경우 전년도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

3.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인수합병이나, 명의변경, 신규사업자 등록 등으로 이름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해오던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체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2월 중에 제2항의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

제17조의2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요청)

제18조 (취업승인 신청)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경우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자)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리사기업체, 변호사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취업승인) ①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다.

②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거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제16조의4에 의한 이해충돌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나 협회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장 징계 및 벌칙

<신설>

제30조 (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신설>

③ (생략)

<부칙><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8조의5 (이해충돌 행위 금지 위반의 죄) 제16조의6을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이해충돌 행위를 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사람

③ (현행과 같음)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1-08호 TSr2011052600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서

발 행 일 2011. 05. 26

발 행 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경건 교수)

담 당 신미지 간사 02-723-5302 shinmeeje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1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ARS후원 060-800-5300

주 소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